

#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안내

<교무처, 2026. 6. 11. (목)>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 및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개정·시행 (2021. 6. 23.시행, 2022. 12. 13. 일부개정)에 따라 **교원자격 취득요건**에 대한 **결격사유**를 다음과 같이 **조회·확인**할 예정이오니,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예정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**확인**하여 향후 교원자격 취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□ 조회근거

-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 2(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

제21조의2(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
1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3. 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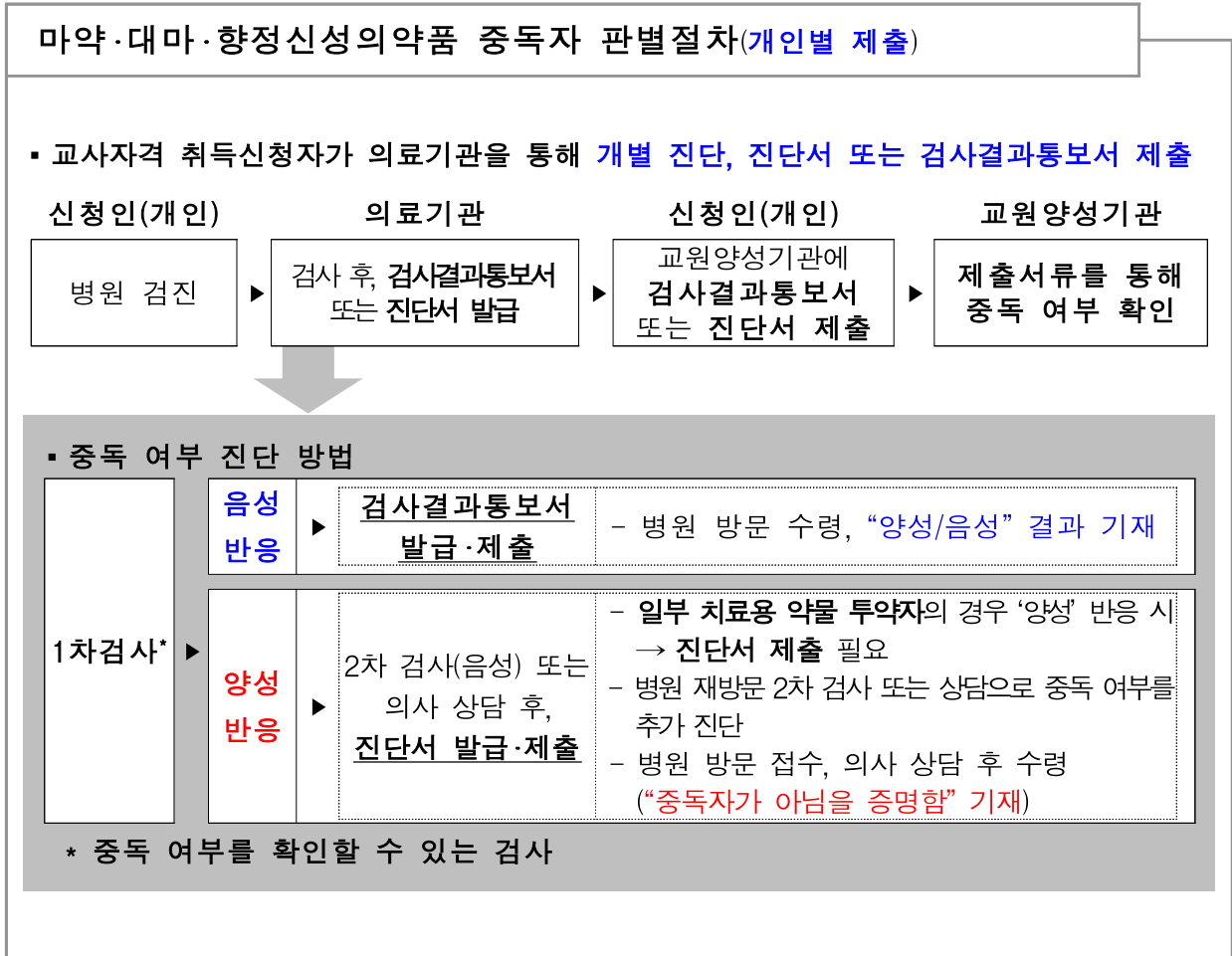
## □ 조회대상

-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

## □ 조회사항

- (성범죄경력) 무시험검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**성범죄 경력 일괄 조회**
  - ※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음.  
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경력조회희신서를 제출해야 함.
- (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) 개인별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제출

## □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절차



## □ 중독여부 관련 제출서류 및 검진 관련 안내

- (제출서류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**진단서** 또는 **검사결과통보서** ※ [붙임 2·3] 참고
  - ※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1차 검사에서 ‘양성’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명시한 ‘의사의 진단서’ 제출
  - ※ 타 법령에 따른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(면허 취득, 채용용 등)도 ‘중독자가 아님’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제출 서류로 인정 가능
- (서류 유효기간)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**1년 이내**에 검진·발급된 경우만 인정
  - ※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(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, 기타 기관 문의 필요)
- (검진기관) **보건소**는 판별검사 **불가**, 검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 등에서 검사 후, 진단서 등 발급 가능(사전예약 필요)
  - ※ 검사결과통보서(=마약검사결과지 등)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,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

## □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제출 서류 안내

-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: 「붙임1」
- 중독 여부\*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: 「붙임2·3」
  - \*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(마약·대마·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)이 아님을 증명
  - ※ 붙임2·3중 택1, 검사결과 통보서의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(진단서) 요청이 있을 수 있음

## □ 문의

- 결격사유 등 교원자격취득 사항 관련: 02-3475-2214 (교무처)
- 검진 예약·서류 발급 관련: 각 의료기관
  - ※ 서류발급 비용, 검진절차, 소요기간 등은 각 의료기관 별로 상이하므로, 방문하시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□ 붙임

- 「붙임1」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
- 「붙임2」 <예시>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진단서
- 「붙임3」 <예시>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

**서울교육대학교 교무처장**

**붙임 1****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**

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&lt;2022.12.13. 시행&gt;

**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**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5일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	
검정 신청 자격	초등학교 2급 정교사		
자격요건	출신학교명	서울교육대학교	과(전공) [ V ] 졸업 [ ] 수료
	연수명	해당 없음	
	경력	해당 없음	

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서울교육대학교 총장 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	(공통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	수수료 없음
담당자 확인 사항	(공통)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제2호·제3호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제2호·제 3호에 따른 범죄 경력	

**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**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제2호·제3호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제2호·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종질지(80g/㎡)]

# 건강 진단서

원부대조필  
인

병록번호 \_\_\_\_\_  
연번 \_\_\_\_\_  
주민등록번호 \_\_\_\_\_ - \_\_\_\_\_

성명		성별		생년월일		연령	
주소				전화			
병명							
소견	<p>위 사람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</p> <p><b>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</p>						
비고							
용도	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			진단일			
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	<input type="checkbox"/> TBPE <input type="checkbox"/> 진단시약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				

발행일 : \_\_\_\_\_  
 의료기관 : \_\_\_\_\_  
 주소 및 명칭 : \_\_\_\_\_  
 전화 및 FAX : \_\_\_\_\_  
 면허번호 : 제 \_\_\_\_\_ 호 의사성명 \_\_\_\_\_ (인)

※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,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

**붙임 3****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(예시)**

접수번호

--

**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**

구 분	시험시행기관	접수번호	성 명
검사시행			(한글)
주민번호			
주 소		전화번호	집)
			휴대폰)

**검 사 내 역**

검 사 내 역			
TBPE검사		기준범위	

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.

2021년 00월 00일

담당의사:

(인)

의사소견	
종합판정	
판정보류 소견	
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2021년 00월 00일  <b>검사 기관 (인)</b>	
사용제한	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도 외 專用(전용)금지

※ 결과통보서는 기관마다 발급가능여부가 상이하므로, 사전 확인이 필요

※ 상기 통보서는 예시로,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